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김재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7.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73호로 2020년 11월 12일 김재진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장 규정」 일부개정으로 규정과 조례의 불일치되는 별지 서식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제5조 ~ 제7조)
- 나. 현행 별지서식의 의회를 나타내는 한자 ‘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
(별지 제1호 ~ 제4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장 규정」
- 나. 입법예고 결과(2020. 11. 13. ~ 11. 17.):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장 규정」 일부 개정 사항인 회장의 한글 표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별지 서식의 회장 모형을 한자 “議”에서 한글 “의회”로 변경함으로써 규정과 조례의 불일치 되는 사항을 일치시키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적절하지 않은 아라비아 숫자 표현을 정비하여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고, 안 제8조제1항의 ‘내지’라는 표현은 일반인이 ‘또는’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정비기준에 따라 “내지”를 “~부터 ~까지”로 정비하였음.

- 검토 결과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다는 측면에서 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

참 고 자 료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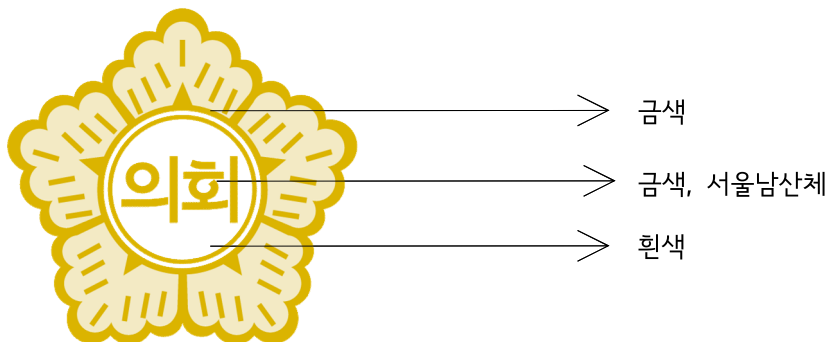
제3조(휘장의 규격 등) 의회 휘장의 문양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1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원형
3. 색상 : 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원형 안쪽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에는 바닥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휘장 모형도

(모 형 도)



(설 명)

- 외 형 : 우리나라의 상징인 무궁화와 굴곡부분 배제한 입체형상
- 중 앙 : 원형 형상
 - 원 형 : 국가를 의미
 - ‘의회’ 자 : 영등포구의회를 의미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법제처, 2019.12.)

7. 그 밖의 정비대상 용어(57쪽)

3) 내지 → ~부터 ~까지의 규정, ~부터 ~까지, ~이상 ~이하

- 일반인이 법령문에 있는 '내지'를 '또는'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지'를 '~부터 ~까지의 규정', '~부터 ~까지', '~ 이상 ~ 이하'로 바꿀 필요가 있다.

🏠 번호에 붙은 '내지'

- 원칙: '~부터 ~까지' 다음에 '~의 규정'을 붙여서 뒤에 오는 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다.
- 예외: '~부터 ~까지'가 열거되는 조문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의 규정'을 붙이지 않아도 문장이 자연스러우므로 '~의 규정'을 붙이지 않는다.

예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를 준용한다.	→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를 준용한다.	→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해당 인용조항의 범위에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명시	
제5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한다.	→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4조 내지 제77조 및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그 밖의 정비대상 용어(61쪽)

6) 아라비아 숫자

- 적절하지 않은 아라비아 숫자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바꾼다.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예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